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젠더화된 행로*

김현미**

| 목차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이주여성의 법적 불안정성과 체류권
3. 모성과 제한적 시민권
4. 성적 위협과 성적 교환
- 1) 친족 성폭력의 위협
- 2) 여정 남편의 존재
5. 결론

| 초록 |

대규모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일정한 변화를 겪었으나, 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법적 위상은 여전하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 한 ‘모성’ 실천은 여성의 체류 자격과 시민권 획득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성적·경제적·문화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이 여성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생존 전략을 촉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수집한 결혼이주여성의 면접 사례와 2019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귀환 여성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법적 불안정성, 모성 시민권,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거래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4년 12월 14일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 (젠더, 모빌리티, 그리고 공존(불)가능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유의한 논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hmkim2@yonsei.ac.kr

주제어: 국제결혼, 법적 불안정성, 모성, 성폭력, 신원보증제도, 이주여성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9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 중심 경제에서 재생산 중심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촉진되었다. 특히 돌봄, 가사, 친밀성 관리와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하던 영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위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이동하는 초국적 노동 흐름이 구조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참여를 넘어 돌봄, 감정노동, 가사 서비스와 같은 재생산 노동 전반에 여성을 핵심 주체로 위치시키는 글로벌 분업 체제를 형성하였다. 국제결혼 역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대표하는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결혼과 가족 구성을 목적으로 한 여성들의 초국적 이동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가족 전략을 넘어, 국가 정책, 인구 구조, 노동시장의 재편과 맞물려 구조적으로 촉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돌봄 제공자, 재생산의 매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젠더화된 이주 체제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족 내혼(endogamy)’을 이상적 결혼 형태로 간주하던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내 조선족 동포와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 여성들이 농촌 지역 미혼 남성의 잠재적 배우자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여성들의 결혼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결혼 시장과 가족 구조는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이혜경, 2005).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결혼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인구정책, 시민권 체계, 젠더 질서 전반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인종, 국적, 지역을 초월한 결합으로 한국사회의 폐쇄적인 단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열린 개방성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결혼이주자는 반-이민 국가인 한국에서 정착형 이민이 허용된 이주자로 이들의 대규모 유입은 한국사회의 혈연주의 국적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대규모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일정한 변화를 겪었으나, 법적 체류권과 국적 취득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법적 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 한 ‘모성’ 실천은 여성의 체류 자격과 시민권 획득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법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이들에게 어떤 성적, 경제적, 문화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주민의 입국, 거주, 그리고 근로 상태는 시민권에 대한 공식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강요되는 취약성과 의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이주자에 부여된 다양한 제한과 구속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정성으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결혼이민 정책과 사회통합의 방향은 결혼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여성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고, 규율하며, 조절하는 권력과 지식의 체제이다. 결혼이주여성 ‘다움’의 사회적 규율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임의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들어, 선주민과의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을 특정한 젠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빠지게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을 신원보증 시스템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모성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거래라는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억압의 다중적 층위를 조명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주요한 분석 개념인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통해 젠더,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차별의 축이 겹쳐지는 현상을 보는 것이다(Crenshaw, 1991). 교차성 관점은 젠더 억압을 단선적 범주로 분석하는 전통적 페미니즘의 한계를 비판하고, 젠더·인종·계급·시민권·섹슈얼리티·이주 배경 등 다차원적 권력 축이 ‘교차’하여 구성하는 억압 구조를 드러내는데 유효하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 시민권 접근성,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단선적인 ‘젠더 억압’으로 환원되지 않고, 비국민, 인종화된 타자성과 계급 등과 서로 얽히고 중첩되는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조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새롭게 촉발되는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과 삶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며, 여성, 소수자, 이주민을 포함한 “타자들”에 대한 극단적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욱 유연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조건을 전면적으로 가용하여 적응력을 발휘해야 한다(Casas-Cortés, 2014).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이들에게 불안정성은 단지 노동시장 접근이나 체류 자격의 불안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성 수행의 의무,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거래, 관계적 의존 구조 속에서의 취약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젠더화된 방식으로 배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은 단순히 피해 서사로 고정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재구성된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감수하거나 불안정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새로운 경험과 전략의 장으로 전환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결혼이주여성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 속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젠더화된 불안정성(gendered precarity)은 그 구조적 조건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조명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려는 이주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

치 못한 법적 취약성,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에 노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개인적 문제로 환원되어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더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선택과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은 한편으로 여성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이를 거스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역설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이 왜 구조적으로 지속되며 그 취약성이 어떻게 가중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이주여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조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경험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다층적인 위협과 불안정성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적 불안정성, 출산과 양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국적 부여와 체류권, 친족 성폭력 피해와 성적 친밀성의 욕망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젠더화된 불안정성을 가속화 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존 학술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심층 면접 자료는 한국에 정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료와 몽골과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사례를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귀환한 베트남 여성의 사례는 2019년에 수행한 베트남 거주(체류)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의 일부이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으며, 최종 연구 결과는 2021년 3월 2일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7001988-202103-HR-705-03). 본 논문은 국민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법·제도 및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행로를 “다층적 불안정성을 거슬러 살아내기”라는 개념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2. 이주여성의 법적 불안정성과 체류권

이주여성은 ‘체류권’ 여부로 삶의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는 저출산과 가족 구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이들의 주변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에 중점을 둔 반면, 이주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취약한 편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이주민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신원 보증제는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외국인 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만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신원보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 ① 법무부 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 외국인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신원보증제도는 외국인을 고용 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책무와 보증만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신원보증제도가 국제결혼에 작동하는 방식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체류권과 국적 획득 전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유사 사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의 신원보증은 이주민의 유입-체류 귀화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외국인 여성이 본국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남편은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최초 입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신원보증서는 최소 2년, 최대 4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보통 4년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신원보증서 기한 내에 최소 1회 이상 기한 연장이 필요하게 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보증기간 만료 후 다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김유정, 2021: 64). 보증인인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및 거주 권리를 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연구자가 몽골에서 면접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결혼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다 인천 공항에서 남편의 보증 철회로 몽골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이 여성은 몽골을 방문한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10일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여성은 몽골로 되돌아갔지만, 남편과 연락이 두절 된 상태였다. 그는 몽골의 시민청에 등록된 결혼을 파기하려 남편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결혼 생활도 해 보지 못한 채 몇 년간 결혼 상태에 있었다. 당시 몽골을 방문한 본 연구자와 활동가가 위임장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2019년 베트남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이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이 임신했으니 잠시 쉴 겸 친정에 다녀오라며 비행기 표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한다.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

오려 했으나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아 재입국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잠적했고, 여성은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기르고 있다. 이렇듯,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의 유입 및 체류 자격 등 한국 내 법적 성원권 획득의 전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막강하다. 이주자의 경우 체류권은 이들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여성들은 체류권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과 착취, 무시 등을 견디는 경향이 크다. 신원보증제는 부부관계를 매우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하게 만들어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이탈자’로 신고하면, 신원보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권은 박탈된다.

체류권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원보증은 여성들을 경제적 취약성을 증폭시킨다. 한국에 온 지 3년째인 필리핀 여성 A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영어 보조교사로 일했고, 이후 공장 근로, 통·번역, 무역회사 직원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약삭같이 돈을 모았다. 어느 날 남편이 체류권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고 했고, 각종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했던 A 씨는 별 의심 없이 모든 서류에 사인했다. 나중에 A 씨는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며,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저축한 모든 돈을 잃었고, 결혼 8년째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다. 남편의 신원보증은 종종 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이어진다.

한국인 배우자의 영향력은 이혼 과정과 이후에도 지속된다. 2019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이혼이 이뤄졌는지 알지 못하거나 법정 이혼으로 이혼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현미 외, 2019).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판결문과 이혼의사확인서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마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관련 서류를 공증한 뒤, 이를 베트남 행정당국에 제출해야 양국에서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여성에게 직접 보내 주는 예도 있으나, 여성 대부분은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결하지 못했다(Kim et al. 2017).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편이 자녀를 빼앗을까 두려워하거나, 이혼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급히 본국으로 귀환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혼이주여성이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혼 절차에서조차 남성 배우자의 협조와 서류 제공이 필수적인 구조는, 여성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타인의 행위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제도적 경계 속에서 '법적 미완의 존재'로 남게 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화된 불안정성의 대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결혼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법적 이혼 절차를 완결하지 못한 여성은 본국에서 새로 만난 배우자와 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으며, 새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또한 할 수 없었다. 법적 이혼 서류가 없으면, 귀환 여성은 재혼은 물론 해외 취업이나 이주노동을 위한 비자 발급 또한 불가능하다.

어머니와 함께 귀환한 한국 국적 자녀의 체류권 역시 아버지의 신원보증에 좌우된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하게 된다(김현미 외, 2019). 한-베 자녀가 베트남에서 체류 불안정성을 겪는 주요 원인은 두 나라의 국적법 구조와 제도 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방식은 다르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인 모의 단독 출생신고도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은 부모의 서면 동의

나 출생지가 베트남일 경우에만 국적을 인정하며,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한다. 법적으로는 예외적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에서는 단일국적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한-베 자녀는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여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하거나 취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여권으로 신원을 증명하고, 사증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여권 및 비자 갱신, 학교 입학, 의료 보험 가입 등 일상적인 절차에서 다양한 제약을 겪는다. 특히 여권 재발급에는 한국인 아버지의 서류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베트남 내 거주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는 지역 행정구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만료 전 갱신 시에도 아버지의 동의가 요구된다. 결혼이 법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이 절차는 동일하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양육자인 어머니의 법적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인 아버지의 동의서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자녀의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많은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의 연락이 끊겨 여권과 비자를 제때 갱신하지 못하고, 베트남 어머니들이 생계나 육아로 바빠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 결과 자녀가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 공동친권을 이유로 양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이미 해외에 거주 중인 아동을 불법체류 상태로 내몰고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더라도 모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더라도 제도적 장벽과 행정 현실 때문에 한-베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거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체류 불안정성과 법적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김현미 외, 2019).

신원보증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0월 3일, “위장결혼 방지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부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계기로 법령 일부가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첨부 의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최초 입국 후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 절차에서는 여전히 재정입증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 보증기간 2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체류 연장을 신청한 이주여성이 방문할 경우 출입국관리 직원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관행은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약화하며, 결과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이 여전히 남편의 의사와 통제에 종속되는 구조를 강화한다. 따라서 다수의 인권단체와 연구자들(김유정, 2021: 90)이 지적하듯이, 최초 체류자격 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모성과 제한적 시민권

Hsia(2021)는 대만으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을 ‘모-자 관계적 시민권(Mother - Child Dyadic Citizenship)’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 개념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의 시민권 형성에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가 두 사람의 법적·사회적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시민권은 개인 단위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니라, ‘모자(母子) 관계’라는 단위를 통해 구성되고 작동하는 제도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저소득

층 남성들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여성을 이주시켜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자 관계적 시민권’은 결혼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담론이 이들의 시민적 지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하는 핵심 개념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언어 능력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문제아’ 혹은 ‘사회적 부담’으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 속에서 이들은 ‘다문화 역량’, ‘언어 자본’, ‘문화 외교의 자원’으로 재평가되었다. 시아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신남방정책 등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라고 지적한다.

‘아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변화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대만 사회는 국제결혼 자녀를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대만인으로 바라보았고, 이러한 시선은 외국인 어머니에게도 부정적이고 엄격한 시민권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대로 자녀가 ‘사회적 자산’으로 재구성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새로운 인정과 기회를 얻었으나, 동시에 모성과 가족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기대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시민권은 여전히 자녀의 존재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녀의 존재는 대만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 지위는 자녀의 권리와 사회적 인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자녀는 어머니의 시민권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대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여성은 체류 자격과 시민권 취득 기회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독립된 시민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어머니’라는 위치를 통해서만 제도적 보호와 인정을 받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된다.

결국 ‘모-자 관계적 시민권’ 개념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각각 독립된 시민권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규범 속에서

상호 연동된 방식으로 시민권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개념은 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이 자녀의 존재와 밀접히 얽혀 있음을 밝히며, 젠더·재생산·시민권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 - 자 관계적 시민권(Mother - Child Dyadic Citizenship)’ 모델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시민권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 출산, 양육은 이제 ‘선택 가능한 삶의 과정’이 되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여전히 ‘모성’을 통해서만 시민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신은주, 2012; 김유정, 2021: 99).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체류와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이자 제도적 보호의 근거가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 자격을 통해 복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성인 시민이자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이 자녀의 존재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결혼이주자’란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으로 규정되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체류 연장과 귀화를 용이하게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출산하지 않은 중국 출신 여성들은 국적 취득에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 ‘위장결혼’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많았다(문경연, 2011). 즉, 부부간의 친밀성보다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모성 수행’이 체류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은 한국의 국제결혼이 단지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농촌 총각 결혼난, 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해 왔다. 전남 고흥군, 전북 임실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등은 35~50세 농어촌 미혼 남성에게 300만~8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는 국제결혼을 ‘인구 재생산 전략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2007년에는 남성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 법안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정착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국제결혼을 제도화했음을 보여준다(김희정, 2007: 67). 20여 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확정하였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

현재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가 저출산 대응 부서와 통합되어 있다. 허오영숙(2018)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당수가 ‘출산다문화팀’, ‘출산장려다문화팀’, ‘저출산대책팀’ 등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존재 근거를 ‘저출산 해결로 전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시민권을 여전히 ‘한국 아이의 어머니’라는 생물학적·재생산적 위치에 종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을 독립적 사회 구성원이 아닌 ‘출산하는 어머니’로 한정하여 상상하며, 이들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역할과 기여를 여전히 비가시화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인구 재생산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실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지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유삼현(2017)의 분석에 따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입국한 여성들은 이주 직후 단기간 내에 결혼과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30대 중반 이후 입국하거나 재혼한 여성들의 경우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관점이 실제 여성들의 나이, 국적, 결혼 경험, 이주 동기,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에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성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모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체류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주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F-6-2(자녀양육)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격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유효하며,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 사유가 소멸한다. 한부모이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김유정, 2021: 57). 즉,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에 도달했거나, 이혼 후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면접교섭권만 가진 여성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김유정, 202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체류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소라미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자식 관계를 단절하는 잔인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이상서, 2020).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21일,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F-6)가 아닌 자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을 전제로 한다. 결혼이주 여성이 거주(F-2)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 능력을 유지하고,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예: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

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3년의 체류를 허용하며, 요건 미충족 시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추가 노력을 요구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기준은 국가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수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통제하는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다. 나아가 국가는 ‘한국 사회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어머니’를 선별하는 심사자로서, 여성의 체류권을 모성의 수행 정도와 도덕적 적합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족 내 사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체류 자격을 끊임없이 심사하고 의심하는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는 여전히 가족이며, 함께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바라는 가족의 안정성과 결속을 제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소수자로서 생존을 위해 심리적 의존과 강한 유대감 속에서 가족을 유지하지만, 출입국관리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체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 결과, 많은 여성은 자녀와 영구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보장받지 못한 채, 언젠가 닥칠 이별을 예감하며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4. 성적 위협과 성적 교환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한 169명의 이주 및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실천 경험을 연구한 우셔(Ussher)와 동료들(2017)은, 여성들이 안전한 성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월경에 대한 수치심, 성 경험을

죄로 인식하는 태도, 성병 감염 및 계획되지 않은 임신 문제 등에서 선주민 여성보다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많은 여성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감내하거나, 성과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성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무례하다”라고 여겨질까 두려워했다. 문화적 수치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보를 탐색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들의 성적 경험은 ‘수치심’, ‘비밀’, ‘침묵’이라는 정서적 스펙트럼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해 남편과 동등한 협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며, 성적 접근을 거부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 우셔와 동료들의 연구는 이처럼 이주여성들의 성적 경험이 수치심과 침묵의 문화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결과 성적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한 남편 혹은 가까운 관계의 남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조차 두려워하게 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류 불안정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폭력을 침묵 속에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고기숙, 2010; 조숙정·조일윤, 2024; 황정미, 2009; 김유정, 2021; Luibhéid, 2008). 특히 이들이 겪는 가정 내 성폭력은 남편뿐 아니라 남성 친족 구성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 성폭력은 공동체 내부의 금기를 건드리는 문제로 여겨져 공론화되기 어렵고, ‘공공연한 비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친족 성폭력의 위협

가정 내 성적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체로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성폭력 또한 빈번하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공동체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젠더, 인종, 계급, 나이가 교차하여 형성하는 이주여성의 구조적 취약성은 남편에 의한 폭력뿐 아니라 남성 친족 집단이나 친구 네트워크에 의한 친족 성폭력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여성의 어머니나 자매가 친족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백소운, 2023).

베트남 여성 푸엥 씨의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인 푸엥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저항하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엄마(아내), ㄱ(아들) 집에 없다.”, “괜찮다”, “돈” 등의 말을 반복하며 위협했다. 재판 과정에서 푸엥이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녀는 13세 때 ‘뺏버혼’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의 아동 약탈혼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은 푸엥이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푸엥은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형사 재판에서 남편의 가족은 푸엥이 돈을 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강간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푸엥은 ‘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결혼 피고인’으로 낙인찍힌 채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이문영, 2018).

필리핀 여성 B 씨의 사건 또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B 씨는 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한국을 방문

했으며, 가족은 언니의 집에 머물렀다. 결혼식 3일 전, 형부는 B 씨를 성폭행했다. 사건 당일 형부는 아내에게 “친구와 즐겁게 보내라”라며 호텔을 예약해주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언니가 신혼 여행을 떠난 직후 언니의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충분했고, 가해자가 동의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7). 이후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B 씨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언니와 주변 여성들의 지지와 연대 덕분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캄보디아 여성 깐냐 씨는 형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언니의 요청으로 조카를 돌보고 가사를 돕기 위해 형부의 초청으로 방문동거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형부의 폭력은 언니가 남편의 폭행으로 입원한 뒤부터 시작되었다. 깐냐 씨는 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키지 않겠다”라거나 “언니를 캄보디아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깐냐 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화, 2017).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장벽과 다중적인 폭력 노출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근친에 의한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성적 금기를 위반한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침묵을 선택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어 수업에 갈 때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거나 뽀뽀를 한다.”, “남편의 친구가 볼을 잡아당긴다.”라는 진술이 빈번히 등장한다. 나이가 어린 결혼이주여성은 종종 집안의 ‘아이’로 취급되며, 성적 주체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돈을 주고 데려온 여성’이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남성 친족에게 공유되는 성적 대상이 된다. 결국, 여성의 몸은 ‘돈’과 교환 가능한 존재로 간주되어 탈인격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이유는 개인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이주·젠더·친족제도의 구조적 조건이 교차하며 형성된 결과이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며느리는 남편뿐 아니라 시부와 시형제 등 남성 친족에게 종속된 지위로 위치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집안의 ‘아이’ 혹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성적 경계가 쉽게 무너진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을 통해 여성이 ‘돈을 주고 데려온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가족 내에 공유되면서, 여성의 몸은 성적 자원으로 대상화되고 상품화된다. 이러한 인식은 시부, 시동생, 형부 등 남성 친족과 주변 이웃 남성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근친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강한 성적 금기를 위반하는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침묵하게 된다. 법적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저항 부족이나 ‘합의 가능성’이 문제시되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편이나 이웃 남성의 폭력을 신고한 여성 중 상당수는 경찰로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먼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반응은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보다 결혼 관계의 유지와 귀환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남편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 국적, 계급, 나이가 교차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법적·제도적 한계, 사회문화적 낙인, 신고 및 보호 시스템의 미비가 결합하면서 피해자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은 결혼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제도적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류권 보장,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가부장제 친족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베트남 귀환 여성 후이(가명)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후이는 2016년, 스무 살의 나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했다.

남편은 부모가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주 입원했다. 후이는 모든 가사와 간병을 맡아 시어머니를 돌보았으며, 남편은 새벽 늦게 귀가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반복적으로 후이를 성추행했다. 후이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후 곧바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다른 베트남 여성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후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온 베트남 남성을 만나 3개월간 동거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연락을 끊고 떠났다. 후이는 임신한 채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출산한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호적에 등록했다. 후이의 사례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친족 성폭력, 남편의 방관, 본국 남성과의 단기적 동거, 가족 구성의 좌절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모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조는 결혼과 친족 관계 안에서 여성을 무임의 성적·가사 노동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결혼 제도는 표면적으로 이주여성을 남성 친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며 '가족'의 보호를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위계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남성 친족 사이에서 침해되고 교환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후이가 다른 베트남 남성과 관계를 맺은 것도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법적·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존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관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임시적이고 불안정하다. 동거 남성 또한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노동이주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결합은 안정적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국 남편과의 결혼이 파탄된 이후,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구성하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법적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안정한 체류와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2) 여정 남편의 존재

후이는 취약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정 남편(journey husband)’을 선택했다. ‘여정 남편’은 이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로 같은 출신지나 국가 출신의 남성(혹은 한국 남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여성 이주자와 임시로 혹은 의도적으로 동거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동과 정착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원래 여정 남편은 여성 이주자가 이동 중 혹은 도착지에서 생존과 정착을 돕는 존재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들은 여성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보호자로서 동행하기도 한다(Women’s Link Worldwide, 2009:13). 그러나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속한 인신 매매업자나 후원자가 ‘남편’을 자처하며 여성을 통제하는 예도 많다. 한국 사회에서 ‘여정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후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생존 자원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내포한다.

연구자가 면접한 또 다른 베트남 여성 호티(가명)의 사례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취약성과 생존 전략을 잘 보여준다. 호티는 2006년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2년 만에 자신을 확대하고 돌보지 않았던 한국인 남편을 떠났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로 향했으나, 기술도 정보도 부족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때 한 베트남 남성이 공장 일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곧 그와 합

게 살게 되었다. 2010년, 한국인 남편은 호티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해 그녀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동거 중이던 베트남 남성 또한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곧 호티가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베트남에서 데려와, 한국에서 4년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2012년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남성이 구속되어 베트남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호티에게 “베트남으로 돌아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인터뷰에서 호티는 “그와 함께 살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또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역시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호티는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사랑의 부재’로 해석했고, 다음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연구자는 호티가 다시 한국인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 남편과의 결혼이 파탄이 난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많은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적 위협과 거래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관계를 통해 불안정한 삶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동시에 그들은 대화가 통하고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같은 출신지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오랜 억압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회복하고 사랑과 친밀성을 다시 경험하려는 심리적 안정의 공간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역시 가족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법적 지위가 없는 여성은 여전히 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남성과 후견적 동거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른바 ‘여정 남편(journey husband)’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상호의존적이지만, 권력의 비대칭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여정 남편은 여성 이주자가 노동, 주거, 정보 접근, 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 대신, 성적·가사 서비

스를 기대한다. 이러한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며, 그 속에서 성적 착취, 경제적 통제, 갈취, 그리고 유기와 같은 폭력적 상황이 발생한다. 결혼이주 여성은 법적 남편, 여정 남편, 연인 등 다양한 관계를 연속적 혹은 단절적으로 거치며, 성적·경제적 종속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낙인과 긴밀히 연결된다. 여성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거나 ‘한국 남편과 위장 결혼을 한 뒤 본국 애인을 불러들였다’라는 뜬소문과 추측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받는다.

한국 남편, 남성 친족, 여정 남편 모두 여성의 성을 교환·공유·도구로 인식하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지속적으로 위태로워진다. 결혼이주여성의 성적 경험은 친밀성, 성폭력, 젠더 불균형, 종족, 경제적 위계, 나이 등 복합적인 교차 권력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들의 취약한 법적 지위와 지속적인 이동의 조건은 성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행 결혼이주 제도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제, 이성애 중심 결합, 문화적·종교적·가족적 권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성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이주여성의 성적 경험과 실천은 체류권의 불안정, 노동 및 정보 접근의 제약, 심리적 위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맥락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들은 성적 주체의 권리에 접근하기 어렵고, 성적 쾌락과 안전, 적극적 성적 선택, 임신과 출산의 자기 결정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

5. 결론

지난 30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장려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 이주민을 철저히 도구적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국가는 이들을 저임금 노동력이나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성역할 수행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인간적 삶과 일상적 경험을 사유의 영역 밖으로 밀어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여

성 이주민은 ‘필요한 타자’로 호출되지만, 여전히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혐오 사회의 주류는 이주민이 권리를 요구할 때 오히려 노골적인 적대감과 증오를 드러낸다(엠펜케, 2017).

그동안의 이주 및 노동 연구는 생산과 임금 노동, 즉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결혼이주여성 연구 역시 사회통합이나 가족 내 역할 수행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 이주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젠더 불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언어적 장벽과 낮은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혼이민자는 어느 정도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인선영, 2019). 그러나 여성이민자가 직면하는 법적·사회적·성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구성하는 다층적 불안정성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불안정성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 권력의 산물이다. 가부장제적 가족관계, 성별 위계, 돌봄과 재생산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교차하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상품화한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법적 권리는 언제나 불안정한 조건 위에 놓인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히 억압의 피해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동조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주여성은 트라우마, 친밀성, 성폭력, 젠더 불균형, 종족, 경제적 위계, 나이 등 교차하는 권력의 장 속에서 자신의 이동과 정착의 조건을 협상한다. 그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모성과 문화적 실천을 통해 가족의 분열을 메우고,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적 결속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문화적 실천은 출신국과 수용사회를 연결하며, 정체성 협상과 심리적 안정의 토대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별화된 불안정성이 여성의 친밀성, 돌봄의 수행, 그리고 노동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주여성의 열망과 선택이 젠더 불안정을 어떻게 재생산하거나 극복하는지를 탐구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의 재생산 위기를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지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한국을 선택한 주체적 행위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장소를 부여받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집행자인 한국인의 시혜와 재량에 의해 위치가 결정된다. 주류 사회가 이주민을 기획하고 선별적으로 배치하는 구조(한건수, 2011)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회로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층적 불안정성을 견뎌야 한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며(Goldring and Landolt, 2013), ‘국민’과 대비되는 다양한 비시민 상태를 지속해서 재생산한다.

‘거슬러 살아가기’는 이러한 젠더화된 불안정성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장소를 모색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 전략을 의미한다. 그들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이주의 복잡성과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하고 재구성하며 저항하는 행위 주체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 불안정성은 개인의 취약성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이주 제도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낳은 산물이다(황정미, 2015; 이운영, 2024). 이주여성의 삶을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차적 억압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의 삶의 가능성과 한계는 수용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포용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관련 법과 시민권 제도가 개방적이고 성평등을 지향할수록 이들의 불안정성은 완화되며, 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다양성 수용 능력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젠더·국적·계급·나이 등 교차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다층적 불안정성을 집단적 목소리로 조직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비국민 모두의 권리를 동시에 확장하는 양방향적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의 실천을 통해서만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9-259.
- 김유정. 2021.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강원법학』 63: 35-85.
- 김현미· 서선영· 이은혜· 정진성. 2019. 『베트남 거주(체류)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 재외동포재단.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지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1-112.
- 신은주. 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325-342.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엠펙, 카롤린 . 2017.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하는가』. 정지인(역). 파주: 다산초당.
- 이운영. 202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징폭력으로서의 차별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문화적 유형의 관계에서 차별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7(2):157-179.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2017.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2017.12.18.).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인선영. 2019.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한국이민학』 6(2):35-85.
- 조숙정· 조일윤. 202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동아법학』 103: 67-95.
- 한건수. 2011. “한국의 다문화 사회 이행과 이주노동자.” 『철학과 현실』 91: 21-31.
- 허오영숙. 2018. “결혼이주여성과 인종차별.” 2018년 UN인종차별철폐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

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자료집(2018.7.20.).

황정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성별 위계와 문화적 편견.” 김영옥 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사회를 만든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5-78.

_____. 2015.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 프레임에서 인간안보 관점으로.” 『한국여성학』 31(4): 1-39.

(2) 국외문헌

Casas-Cortés, Maribel. 2014. “A Genealogy of Precarity: A Toolbox for Rearticulating Fragmented Social Realities in and out of the Workplace.” *Rethinking Marxism* 26(2): 206-226.

Crenshaw, Kimberle.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 - 99.

Goldring, Luin and Patricia Landolt, eds. 2013. *Producing and Negotiating Non-citizenship: Precarious Legal Status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Hsia, H.-C. 2021. “From ‘social problems’ to ‘social assets’: geopolitics, discursive shifts in children of Southeast Asian marriage migrants, and mother-child dyadic citizenship in Taiwan.” *Citizenship Studies* 25(7): 955-974.

Kim, Hyun Mee, Shinhye Park and Ariun Shukhertei. 2017. “Returning home: Marriage migrants’ legal precarity and the experience of divorce,” *Critical Asian Studies* 49(1): 38-53. DOI: 10.1080/14672715.2016.1266679

Luibhéid, Eithne. 2008. “Sexuality, Migration, and the Shifting Line between Legal and Illegal Status.”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4(2/3): 289 - 315.

Ussher, Jane M., Janette Perz, Christine Metusela, Alexandra J. Hawkey, Marina Morrow, Renu Narchal and Jane Estoesta. 2017. “Negotiating Discourses of Shame, Secrecy, and Silence: Migrant and Refugee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Embodiment,” *Arch Sex Behav* 46: 1901 - 1921. DOI 10.1007/s10508-016-0898-9

Women’s Link Worldwide. 2009. Migrant Women’s Rights: An Invisible Reality. Migration Link 2009, 13.

(3)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김영화. 2019. “들리지 않는 목소리, 이주여성의 ‘미투’.” 〈시사인〉. 2019.3.12.

- 백소윤. 2023. “이주여성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들.” 〈일다〉. 2023.8.1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 5월. 〈통계 월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관리법. <https://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검색일: 2024.11.25.]
- 이문영. 2018. “친족성폭행·혼인취소…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악탈 14년.’” 〈한겨레신문〉. 2018.1.20.
- 이상서. 2020. “다문화가정 부모-자식 생이별하게 만든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20.8.25.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 “이주여성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걸음 -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면 폐지를 환영하며”. 보도자료. 2025.7.22. <http://www.wmigrant.org/wp/성명-이주여성의-존엄과-평등을-위한-걸음-국제결혼/> [검색일: 2025.7.25.]

Abstract

Navigating Layered Precarities
– Legal Status and Gendered Pathways
of Marriage Migrant Women

Kim, Hyun Mee
(Yonsei University)

Thirty years after the emergence of large-scale cross-border marriages,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have evolved to some extent. Yet, the legal authority of South Korean husbands, who continue to exert decisive influence over their spouses' residency and nationality, remains largely intact. "Motherhood," defined through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till functions as a key condition for women's residence status and citizenship.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structural denial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independent legal subjects generates sexual, economic, and cultural insecurities, and how such gendered precarity simultaneously deepens vulnerability and stimulates diverse survival strategies.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nd with returnee women in Vietnam in 2019, the analysis reveals how women's narratives and practices expose the intersection of law, gender, and citizenship. Focusing on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 legal insecurity, maternal citizenship, and the repression and commodification of sexuality – the article Through the three analytical dimensions of legal insecurity, maternal citizenship, and the repression and commodification of sexuality, the article seeks to elucidate the structural mechanisms of gendered oppression experienced by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cross-border marriage, legal precarity,
maternal citizenship, sexual violence,
Korean guarantee system, marriage migrant women

- 투 고 일 : 2025년 8월 31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7일

